

증보판 <명심보감>에 수록된 효자 도시복 관련 고문서 고찰

박 성 호*

- I. 머리말
- II. 성주도씨 고문서에 나타난 도시복과 그의 가계
- III. 44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효자 褒獎 요청
- IV. 일제강점기 증보판 『明心寶鑑』에 수록된 도시복
- V. 맺음말

국문초록

최근 19세기 아래 성주도씨 후손가에 전해져 온 효자 도시복 관련 고문서 59점이 예천박물관에 기탁되었다. 이 고문서 가운데는 도시복이 생존했던 19세기에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도시복의 효행을 나라에서 포장해 주기를 요청한 청원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도시복의 실존성을 뒷받침해 주는 당대의 공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고문서는 19세기 풍기군(현 예천군) 상리면 야목리에 살았던 도시복의 효행이 당대를 비롯하여 후대에까지 알려지게 된 중요한 근거 자료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증보판 『명심보감』에 수록된 도시복의 효행 내용을 19세기 고문서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중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 travis20195@aks.ac.kr

에게 널리 알려진 효자 도시복의 일화와 그 원형이 된 19세기 고문서에
적힌 내용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 주제어

효자, 도시복, 고문서, 증보판 명심보감

I. 머리말

2000년대 이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효자 都始復(1817-1891)의 생가를 복원하고,¹⁾ 해당 생가가 있는 면의 명칭을 상리면에서 효자면으로 변경하였다.²⁾ 이는 조선후기 인물로서 효행으로 『明心寶鑑』에 수록된 도시복의 행적을 기념하고, 이를 지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 의도로 보인다.

『명심보감』은 조선 초에 국내로 유입된 아래 『童蒙先習』, 『擊蒙要訣』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문 童蒙書이자 전통시대의 기본 윤리를 잘 요약한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오랫동안 일반에 널리 알려진 서적에 효자의 대표 사례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연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예천군의 지원으로 효자 도시복의 효행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만화 형식의 책자가 발행되기도 했지만,³⁾ 아직까지 도시복이라는 인물의 역사성을 증명하거나 그의 효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본 학술적 탐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명심보감』의 단편적인 기술과 실록에 수록된 암행어사의 보고 내용 정도의 제한된 정보 외에는 도시복의 효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성주도씨 후손가에 전해진 도시복 관련 고문서가 예천박물관에 기탁됨으로써 도시복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의 효행에 대한 당대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효자 정려에 관한 고문서 분석 사례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상세히 수행되었지만⁴⁾, 『명심보감』과 같이 대중

1) 동아일보(2005.06.02.), [대구/경북] “명심보감에도 소개된 효자 도시복 생가 복원”

2) 2016년 2월 1일 상리면이 효자면으로, 하리면이 읍풍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군조례 제2157호). (출처: 예천군청 홈페이지)

3) 임강촌, 『하늘이 낳은 효자 도시복』, 두레미디어, 2011, 1~147쪽.

4) 김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藏書閣』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

들에게 널리 읽힌 서적에 수록된 효자 사례의 근거가 된 원본 고문서가 발견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예천박물관에 기탁된 도시복 관련 고문서를 바탕으로 19세기 인물 도시복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 그의 효행이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되어 44년 동안 포장 요청이 이어진 과정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증보판 『명심보감』에 수록된 내용을 고문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효자 도시복 일화의 변모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성주도씨 고문서에 나타난 도시복과 그의 가계

2022년 성주도씨 도시복의 후손가에 전래된 고문서 59점이 예천박물관에 기탁되었다. 이 고문서는 조선 후기에 살았던 효자 도시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료로서 그의 생존 시기 전후에 작성된 원본 문서이다. 도시복의 백부 도상분과 아버지 도상진의 생존 시기인 1821년부터 도시복의 아들 도진화의 생존 시기인 1904년까지 당시 이들이 살았던 주거지의 관할 행정구역인 풍기군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문서 17점, 지역 유생들이 연명하여 도시복의 효행을 나라에서 褒獎해 주기를 요청한 所志類 문서 38점, 도시복과 도진화가 풍기군에 제출한 소지류 문서 2점, 도시복의 부친상 때 받은 慰狀 1점, 1935년 재단법인 대동사문화회에서 보내온 答通文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호구문서에 나타난 도시복의 가계

04, 97~139쪽.; 박주, 「18·19세기 東來府 頴陽千氏 집안의 孝子旌闈 청원 과정」, 『史學研究』85, 한국사학회, 2007, 77~120쪽.; 이수진, 「조선후기 旌闈 관련 고문서와 제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등

조선시대 호적 행정은 매 식년(3년)을 주기로 이루어졌다. 개별 戶마다 식년에 맞춰 戶口單子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아에 제출하고, 관아에서는 보관중인 호적과 대조하여 변동여부를 확인 후 신규 호적 작성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관에서는 최신화된 호구 내용을 반영한 準戶口를 작성하여 해당 호에 발급해 주었다. 『經國大典』에는 이러한 원칙적인 절차를 반영하여 禮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호구식’과 ‘준호구식’을 각각 별도로 수록해 놓기까지 했다.⁵⁾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조선 후기에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삼년마다 반복되는 호적 사무에 비해 각 관아의 인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관의 번거로운 행정적 소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되어 간 것이다. 요컨대, 각 호에서 매 식년마다 제출한 호구단자가 관의 확인을 거쳐 기내 내용의 정밀성이 완료되면,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날인해 다시 준호구로서 해당 호에 되돌려졌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⁶⁾ 대체로 18세기를 지나면서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처음부터 각 호에서 준호구적 성격의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해당 문서가 관의 확인 및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제출자에게 준호구로 되돌려졌던 것이다. 성주도씨 후손가에 전해진 호구문서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풍기군에서 발급한 준호구적 성격의 호구문서로 볼 수 있다.

광무 연호를 선포한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면서 관계의 변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관에서 발급하던 호구문서도 ‘戶籍表’로 서식이 바뀌었다.⁷⁾ 성주도씨 후손가의 고문서 가운데에도 1897년 이후에 도진화에게 발급된 대한제국기의 풍기군에서 발급한 호적표가 4점 포함되어 있다.

5) 『經國大典』禮典, 戶口式 / 準戶口式.

6)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單子와 準戶口의 작성과정 연구 -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22~28쪽.;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研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96~101쪽.

7)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262~263쪽.

<표 1> 호구문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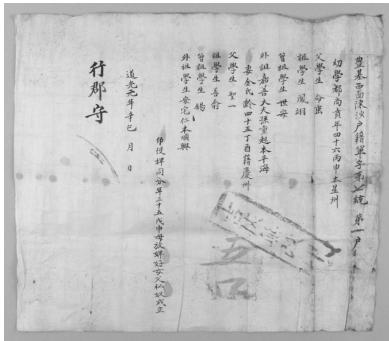
연번	문서명	관할관청	크기(cm)	비고
1	1821年 都尙賁 戶口單子	풍기군	47.4×41.2	도상분: 도시복의 伯父
2	1855年 都尙震 戶口單子	풍기군	57.9×52.5	도상진: 도시복의 父
3	1858年 都尙震 淮戶口	풍기군	40.3×46.5	
4	1861年 都尙震 淮戶口	풍기군	43.7×46.4	
5	1864年 都尙震 淮戶口	풍기군	44.1×57.8	
6	1867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57.8×50.6	도시복
7	1870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51.7×50.6	
8	1873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58.8×52.0	
9	1876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50.5×40.3	
10	1879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51.4×36.2	
11	1882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48.9×42.6	
12	1885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47.1×41.6	
13	1888年 都始復 淮戶口	풍기군	55.3×47.0	
14	1897年 都鎮華 戸籍表	풍기군	23.6×35.1	도진화: 도시복의 子
15	1900年 都鎮華 戸籍表	풍기군	19.0×32.2	
16	1903年 都鎮華 戸籍表	풍기군	21.1×32.3	
17	1904年 都鎮華 戸籍表	풍기군	22.3×36.9	

① 1821년 호구문서

“豐基 西面 陳沙 戸籍單字 第七統 第一戶”로 시작하여 도상분(1776-?)의 나이, 출생연도, 본관을 적은 후 四祖와 처 김씨를 비롯한 처의 사조 및 노비 현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다.

증보판 〈명심보감〉에 수록된 효자 도시복 관련 고문서 고찰(박성호)

<자료 1> 1821년 도상분 호구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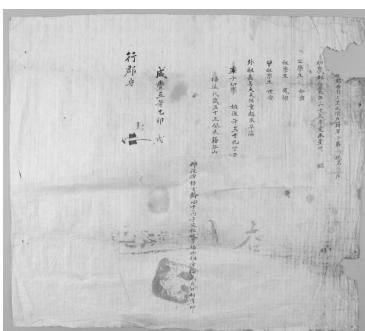
…(생략)…

幼學 都尙貴 年四十六丙申 本星州
父 學生 命垂 祖 學生 凤翊 曾祖 學生 世安
外祖 嘉善大夫 孫重起 本平海
妻 金氏 鮚四十五 籍慶州
父 學生 聖一 祖 學生 善俞 曾祖 學生 錫 外
祖 學生 安宅仁 本順興
仰役 婦 同分 年三十五 戊申 母 放婢 好女
父 私奴 成立

② 1855년~1864년 호구문서

모두 도상진(1791~?)에게 발급된 것이고, 수량은 총 4점이다. 1855년 호구단자에는 “(豊基)郡 西面 上里 也項 第七統 第五戶”로 주소가 적혀 있고, 나머지 3점에는 통호만 기재되었거나 “西面 上里”만 적혀 있다. 여기에 적힌 “상리 야항”이라는 지명은 ‘목 항[項]’자를 쓰기 때문에 ‘야목’으로도 불린다. 앞의 1821년 도상분 호구문서와 비교할 때 도상분과 도상진은 열다섯 살 터울의 형제로 추정된다. 1855년 호구문서에서 도상진은 나이 65세, 훌아비[鰥]로 적혀 있고, 이 문서에서 비로소 아들 도시복과 도시복의 처 연씨가 등장한다.

<자료 2> 1855년 도상진 호구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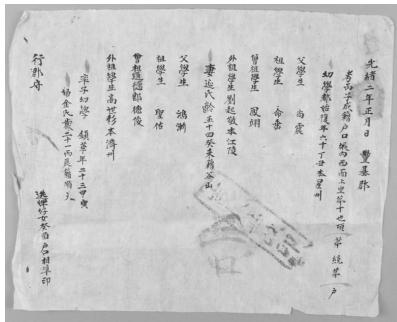
…(생략)…

率子 幼學 始復 年三十九 丁丑
婦 延氏 歲三十三 癸未 籍谷山

③ 1867년~1888년 호구문서

이 시기의 호구문서 8점은 모두 풍기군에서 도시복(1817-1891)에게 발급한 것이다. 1866년(고종 3) 도상진 사망 이후 1867년 호구문서부터는 도시복에게 문서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들 문서에도 풍기군 “西面 上里” 통호수가 기입되어 있다. 다만, 도시복의 아들 도진화는 1876년(고종 13)에 발급된 문서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도진화는 이미 23세였고, 혼인도 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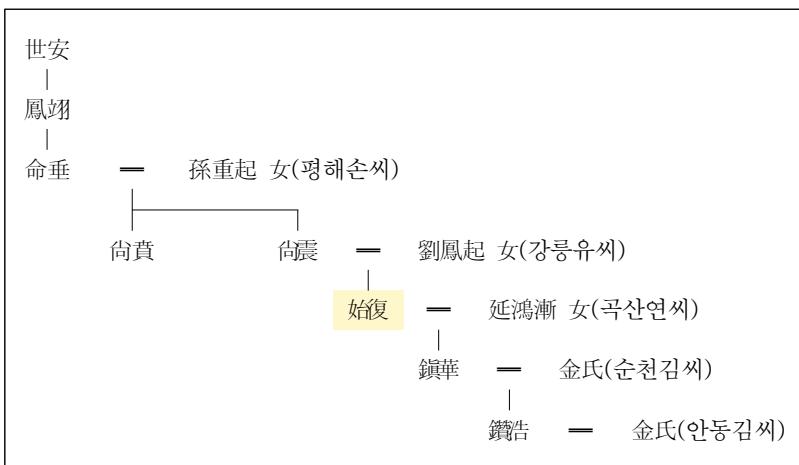
<자료 3> 1876년 도시복 호구문서



…(생략)…

幼學 都始復 年五十一 丁丑 本 星州。
父 學生 尚震 祖 學生 命垂 曾祖 學生 凤翊
外祖 學生 劉起敬 本江陵
妻 延氏 齡四十六 癸未 籍谷山
父 學生 鴻漸 祖 學生 聖佑 曾祖 通德郎 德
俊 外祖 學生 高世彩 本濟州
率子 幼學 鎮華 年三十三 甲寅
婦 金氏 歲二十一 內辰 籍順天

이상의 호구문서는 조선후기 순조 재위기로부터 고종 재위기까지 풍기군에서 매 식년을 기준으로 발급한 공문서이다. 이를 통해 풍기군 서면 상리(현 예천군 효자면)에 살았던 도상진, 도시복, 도진화로 이어진 성주도씨 가계의 호구 내역을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성주도씨의 연원은 중국 前漢 시대의 인물 都稽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한국사에서는 백제의 都彌, 고려 개국을 도왔던 都陳으로 계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인물들의 앞뒤 계보가 빠짐없이 확인되지 못하는 턓에 대체로 고려시대 전리상서를 지낸 都順을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잊고 있다.

조선 후기로부터 현대까지 간행을 거듭한 성주도씨족보(대동보)에 따르면, 도시복의 上系는 도순의 장자 계열인 順 - 忠朴 - 有道 - 孝源 - 洪京 - 及時로 이어지는 大邱派와 연결된다.⁸⁾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지역민들의 소지류 문서에 언급되듯이 도시복이 대구에서 옮겨와 사는 사람이라는 내용과 통한다.

及時의 후손 가운데서는 永壽 - 允弼 - 福珪 - 天啓로 이어지는 계열이 형성되었는데, 예천군 용궁면(조선시대 용궁현)에는 조선시대 이래 도친계의 자손들이 세거하게 됐고, 이들을 성주도씨 진사공파로 일컫는다. 그리고 天啓의 후손으로 以億 - 模宗 - 範 - 文均 - 茂年 - 好仁 - 應繼 - 慶倫 - 慎佑 - 壽聃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도수담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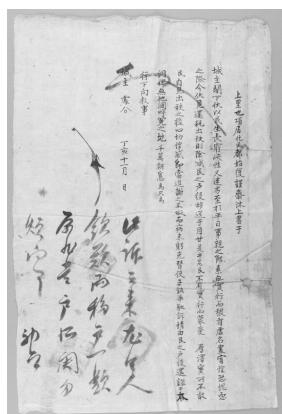
8) 星州都氏大同譜編纂委員會, 『星州都氏大同譜』, 2013.

도세안이 태어났다. 도세안이 바로 위 호구문서에서 확인된 도시복의 高祖이다.

따라서 도시복 집안의 계보는 성주도씨 가운데 대구파에서 비롯되어 예천 용궁 일대로 이거한 진사공파의 후예로 파악된다. 실제로 용궁의 진사공파 자손들은 예천, 풍기 지역 여러 곳에서 세거지가 확인되므로 계보상으로는 도시복의 가까운 상계도 일찍이 대구에서 분가된 성주도씨 진사공파의 후예로 추정된다.

2. 풍기군수 앞으로 올린 도시복의 소지

조선시대의 所志는 지방과 중앙을 막론하고 民이 관청에 제기할 사안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신청 문서였다. 작성 양식이나 용어에 따라 소지, 발괄, 상서, 등장, 의송 등으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런 유형의 문서를 소지류 문서로 통칭한다.⁹⁾ 성주도씨 후손가에는 지역민들이 제출한 소지 외에 도시복이 관에 제출한 소지도 남아 있다.



<자료 4> 1887년 도시복 상서

9) 이다희, 「조선시대 所志類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0~22쪽.

상리 야항(야목)에 사는 화민 도시복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성주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아뢰건대, 저는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자라서 성품이 보잘 것 없고, 평소 부모를 모시는 데에도 별다른 실행이 없는데도 외람되어 허명(실제와 다른 명성)을 얻게 되어 밤낮으로 황공하고 부끄러워하던 차에 최근 환모(還耗) 납부액을 들여 다보니 제 뜻의 호역(戶役)이 빠지고 월감 마을 뜻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효행이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터운 은택까지 입어 실로 감당할 수 없는데다가 이번에 호역에서도 빠지게 된 후로는 마음이 더욱 황송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사의를 표할 겨를도 없이 병이 나서 대신 아들 진화를 시켜 이런 정황을 아뢰오니 저의 호역을 다시 제가 사는 마을로 복구시켜 주시어 다른 마을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천만 번 간절히 바라옵니다. 시행해 주십시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정해년 11월 일.

관 (착압)

[제사] 이러한 소지를 올리다니 더욱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호역의 배정을 옮긴 것은 원래부터 너의 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이런 요청을 하지 말도록 하라. 초6일.¹⁰⁾

위 내용처럼 1887년(고종 24) 11월 도시복은 풍기군수에게 문서를 올려 하소연 하였다. 당시 나이 70살을 넘긴 노인 도시복은 자신이 효자로 칭송되는 것을 매우 황송해 하는 마음을 드러냈고, 게다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을 효자라는 명목으로 감면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였다. 더군다나 자신에 대한 호역의 감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풍기군수는 도시복의 이런 태도를 높이 평하면서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회신하였다.

10) 上里也項居化民都始復, 謹齋沐上書于 城主閣下. 伏以民生長窮峽, 性又迷劣, 至於平日事親之節, 素無實行, 而猥有虛名, 畫宵惶恐愧恧之際, 今伏見還耗出秩, 則除減民之戶役, 移送于月廿是乎尼, 民不有實行, 而蒙受 厚澤, 實所不敢. 民自見出秩之後, 心切惶惑, 卽當進謝之不暇, 而病未躬克, 替使子鎮華, 馳訴情由, 民之戶役, 還錄于本洞, 倘無他洞呼冤之地, 千萬祈懇爲只爲. 行下向教事.

城主處分. 丁亥十一月 日.

官 (押)

[題辭] 此訴之來, 尤令人欽歎, 而移戶一款, 原非當戶所關, 勿煩向事. 初六日.

이듬해인 1888년(고종 25) 2월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아들 도진화를 시켜 풍기군수에게 한 차례 더 문서를 올렸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19세기에 살았던 도시복은 여느 백성들이 자신의 고을 수령에게 소지를 올리던 방식대로 스스로를 “상리 야항(야목)에 살고 있는 화민 도시복”으로 지칭하면서 소지를 올렸고, 수령은 제사를 적어 회신하였다. 특히 ‘化民’이라는 표현은 조선후기 소지류 문서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양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에 사용한 표현이었다.¹¹⁾ 도시복은 살아있을 때부터 효자로 인식되었고, 관아에서도 일정 부분 이에 대한 대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III. 44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효자 褒獎 요청

조선시대에는 국가 정책으로 충신, 효자, 열녀를 찾아내어 그들의 행실에 대해 국가가 포상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장려하는 제도가 적극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선후기에는 전국의 각 고을 및 가문들이 경쟁적이라 할 만큼 과열된 신청 양상을 보였고, 조선후기 정조대에 반포된 『대전통편』에 이르러 식년 주기로 대상자를 신청 받아 예조에서 심의 후 왕께 아뢰어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일반적인 절차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고을 수령에게 청원 문서 제출하면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 관찰사, 예조를 거쳐 국왕의 윤허를 받아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암행어사를 통해 국왕에게 호소하거나 국왕의 행차에 맞춰 곧바로 왕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¹²⁾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수많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경우에 따라 고을 수령이나 관찰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더 이상

11) 전경목, (고문서용어 풀이)「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古文書研究』6, 한국고문서학회, 1994, 150~157쪽.

12) 박주, 「朝鮮時代 孝子에 대한旌表政策」, 『韓國思想史學』10, 한국사상사학회, 1998, 291~311쪽.; 이수진, 앞의 논문, 109~115쪽.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도 했고, 중앙 관서의 심의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도시복의 사례도 풍기군수, 경상도관찰사, 암행어사 등을 통해 44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친 효자 포장 요청이 반복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하에서는 현존하는 소지류 문서를 토대로 그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을 수령과 관찰사에게 제출된 지역민들의 청원문서

성주도씨 후손가에 전해진 고문서 59점 가운데 효자 도시복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한 소지류 문서는 모두 38점이다. 이 가운데 작성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848년(현종 14) 8월에 풍기군에 사는 유학 金永壽, 蔡蓍 九 등이 풍기군수에게 올린 상서이고, 작성연도가 가장 늦은 것은 1892년(고종 29) 9월에 풍기군에 사는 유학 金相順, 宋源星, 黃學銖 등이 풍기군수에게 올린 상서이다. 1848년은 도시복이 32세였던 해이고, 1892년은 도시복이 사망한 바로 다음 해였다.

먼저 남아 있는 고문서 가운데 작성 연도가 가장 이른 1848년(현종 14) 8월에 유학 김영수, 채시구를 비롯하여 문서 말미에 43명이 聯名으로 풍기군수에게 올린 상서를 살펴보자.

유학 김영수, 채시구 등이 목욕재계하고 성주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성주께서 다스리시는 치하의 상리면 야항리(야목리)에 사는 도시복은 대구에서 옮겨와 사는 사람으로 별다른 배움은 없습니다. 궁핍한 겨울을 맞아 가을에 쌓아둔 양식도 없어 하루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는 숯과 맷돌을 팔아 맛난 음식을 드리는 데 지극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당 쓸고 남새밭 돌보는 수고도 걱정 끼치지 않게 잘 했고, 장날마다 숯을 팔아 밥과 반찬이 끊기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숯을 판 돈을 잃어버려 이리 저리 배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차에 우연히 길에 떨어진 돈 꾸러미를 보고는 주인이 반드시 찾으려 다닐 것이라 생각하여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켜주었지만, 끝내 찾으려 오는 이라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돈으로) 쌀과 생선을 사서 밤길을 무릎 쓰고 급히 귀가하다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을 맞닥뜨렸습니다. 시복이 호랑이 앞으로 나아가 이르기를, “너는 비록 미물이지만, 금수 가

운데 영물이도다. 내가 어버이께 드릴 음식을 가지고 밤을 잊고 귀가하는 길인데, 만약 네가 나를 잡아먹고자 한다면 나는 마땅히 피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나를 잡아먹지 않으려거든 내게 길을 내어 주거라.”라고 하니, 호랑이가 바로 길가로 내려 앉았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표범 한 마리가 산에서부터 달려 나와 시복을 향하였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던 호랑이가 포효하며 뛰어들어 표범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일찍이 부모가 병이 나서 꿩을 먹고 싶다 했으나 구할 방도가 없었는데, 마침 꿩 한 마리가 장작더미로 떨어져서 그걸 가져다 대접했습니다. 참으로 진실된 효도에 하늘이 감응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친상을 당하여 상장례를 치르면서 꼭 하고 애통해함에 그 정성을 다하여 예를 아는 그 어떤 군자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어버이를 잡아먹는 짐승 무리가 들판에 있더라도 까마귀는 제 부모 먹이기를 멈추지 않고, 비바람 몰아쳐 어둑한 때에도 닦 옮음소리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과 같으니, 무릇 천성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에 마음이 요동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어버이를 섬기는 도는 오직 효가 가장 큰 덕목이고 모든 행실의 근본이니, 고을에서 앞 다퉈 내세울 것은 효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나라에서 포장할 것도 효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 우리 조정에서는 백성을 효로써 가르치시고, 삼강오륜을 권장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궐의 문이 아득히 멀어서 시골 마을의 탁이한 효행을 위에까지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건대, 양향이 어버이께 효도하니 표범이 물지 않고, 왕상이 얼음을 깨니 잉어 한 쌍이 뛰어 나왔다는 고사도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이를 역사책에 기록하고, 정려를 내려 표시한 것은 모두 후세에까지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복의 효가 문헌 채 나라의 포장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 고을의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희가 감히 그 사실을 적어 우리 성주께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관찰사께 잘 보고해 주시옵소서. 천만 번 바라옵니다. 시행해 주십시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무신년 팔월 일.

황대린, 황재희, 김용재, 채주호, 남한장, 황중엽, 한치선, 황중묵, 황준하, 진항길, 이종전, 권방좌, 이규서, 김익재, 황중경, 황승하, 김성발, 송■■, 황주하, 황성하, 권석모, 황재찬, 황정하, 이기경, 김성수, 황재명, 황영한, 김상학, 남기교, 김제윤, 이만기, 황중무, 진재겸, 황계주, 이기홍, 곽선경, 황성하, 곽문흠, 나영광, 김효순, 박희순, 채학구, 안봉희 등.

관(암)

[제사] 이 고을에 이처럼 특출난 효행을 한 사람이 있다니 매우 가상하다. 마땅

히 관찰사께 보고할 것이다.¹³⁾

위 문서가 도시복의 효행에 대해 고을 수령에게 제출한 최초의 문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일련의 고문서 가운데서는 가장 시기가 앞선다. 그리고 위 문서는 수록된 내용도 매우 상세하여 이후의 문서들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서 주목할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3) 幼學金永壽蔡薈九等，齋沐上書于城主閣下。伏以治下上里面也項里居都始復，自大丘來偶之人，素無識字。又逼窮寒，秋無顛石，朝不謀夕，而事其二親，負炭負薪，甘旨之供，靡不用極。至於掃庭治圃之勞，無使貽憂，逐市賣炭，以繼米饌，一日遺失賣炭錢於市上，彷徨號泣之際，偶有一緡錢於千萬人來往之路，意謂有主必尋，終日守之，竟無覓者，不得已買米買魚，冒夜忙還，忽有一大虎當路而坐，始復遂進而前曰，爾雖微物，即獸之靈者，吾以供親之具，罔夜而歸，爾欲飼我，我當不避，不欲飼我，借我歸路，虎乃移坐路下。又有一豹虎，自山坡鼓頰直前，若將向我，俄者路下之虎，咆哮驅進，大獸逐之，如是者數次，無撓抵家矣。曾有親病，所思者生雉，而無路求得，適有一雉飛墮於擔薪之前，取而供之，苟非誠孝之所感，豈能致此乎？又遭內艱，殯葬之節，哭泣之哀，極其誠敬，無愧於知禮之君子。此所謂梟獍在野，烏哺不止，風雨如晦，鳴雞獨聽，凡在秉彝之天，孰不聳動而嗟歎乎？大抵事親之道，惟孝為大，而又是百行之源，則鄉邦之所揚，莫先於孝。國家之所褒，亦莫善於孝。猗歟我聖朝道民以孝，三綱之編五倫之圖，勸之獎之，無所不至，而天門邃遠，閨閣間卓行善蹟，無路上達，民等窃以謂楊香孝親豹虎不咥，王祥剖冰雙鯉躍出，則至孝之感，古今一也，皆播之簡策，旌之棹禊，為後世勸，而始復之孝，埋沒而不章，則豈不為鄉鄰之所羞乎？茲敢錄其事實，入告我邑大夫，伏願轉報■…■樹風聲之地，千萬幸甚，行下向教事。城主處分。戊申八月 日。

黃大鱗，黃載熙，金龍在，蔡周虎，南漢章，黃中燁，韓致璿，黃中默，黃俊夏，秦恒佶，李宗傳，權邦佐，李奎書，金翼在，黃中慶，黃昇夏，金性灤，宋■■，黃柱夏，黃聲夏，權錫模，黃在鑾，黃正夏，李起敬，金性粹，黃在明，黃英漢，金商學，南基教，金濟倫，李晚箕，黃中懋，秦在謙，黃啓周，李基鴻，郭善慶，黃成夏，郭文欽，羅永光，金孝順，朴會淳，蔡鶴九，安鳳熙 等。

官(押)

[題辭] 此鄉有此特異之行，極為嘉尚，第當轉報向事。

가. 도시복의 인적 배경

- 현 거주지: 풍기군 상리면 야항리(야목리)
- 전 거주지: 대구
- 학식: 배움이 없음(無識字)
- 집안 형편 및 생계 수단: 매우 궁핍하고, 숯과 땔감을 팔아 생계 유지

나. 도시복의 효행과 관계된 일화

- 장에서 부모를 위한 쌀, 고기를 사오다 호랑이를 만났으나 오히려 도움을 받음
- 부모가 꿩을 먹고 싶다고 하자 꿩이 스스로 도시복의 집으로 날아와 떨어짐
- 모친상에 곡하고 슬퍼하는 예를 극진히 함

1848년 8월에 풍기군의 유학 김영수와 채시구 등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고을 수령인 풍기군수에게 도시복이라는 인물의 효행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관찰사께 아뢰어 결과적으로는 나라에서 도시복을 효자로 정려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복이라는 인물의 기본적인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의 효행 가운데 도드라지는 행적을 기술하였다.

도시복은 타 고을인 대구에서 옮겨 온 사람이고, 특별히 배운 것도 없으며,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부모를 봉양했음을 우선 언급하였다. 이어서 기이한 행적이라 할 만한 호랑이를 맞닥뜨린 일화, 꿩이 스스로 날아와 떨어진 일화를 소개하였고, 조선시대 효행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상장례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부가하였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선후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효자 정려의 수혜가 최종적으로 풍기군 상리면의 도시복에게도 미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후 도시복의 효행을 나라에서 포장해 주기를 요청한 지역민들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어 아래의 표를 통해 풍기군수와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지역민들의 소지류 문서 내역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2〉 풍기군수와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현황

연번	작성 연월	발급자 (연명자 수)	수취자	비고(요지, 제사 등)
1	1848.8.	金永壽 등 (48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2	1849.3.	黃大鱗 등 (미상-결락)	경상도관찰사	“식년을 기다리라”는 처분
3	1850.2.	蔡蓮九 등 (37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4	1852.7.	黃大鱗 등 (18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5	1852.8.	黃在明 등 (57명)	경상도관찰사	“후식년을 기다리라”는 처분
6	1853.12.	黃在明 등 (18명)	풍기군수	신관 사또 부임에 따른 요청
7	1854.2.	李起敬 등 (15명)	경상도관찰사	“식년을 기다리라”는 처분
8	1856.2.	蔡周虎 등 (28명)	경상도관찰사	“마땅히 포양될 것이다”는 처분
9	1857.3.	金商雨 등 (9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10	1857.12.	李晚斗 등 (36명)	경상도관찰사	“이미 아뢰었으니 기다리라”는 처분
11	1858.1.	金敬植 등 (28명)	겸성주	“겸임 수령이지만 아뢰겠다”는 처분
12	1858.4.	金商雨 등 (22명)	풍기군수	“공의를 좀 더 모으라”는 처분
13	1860.10.	金性運 등 (34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14	1860.12.	洪肯柱 등 (34명)	경상도관찰사	“포양될 것이다”는 처분
15	1862.9.	金敬植 등 (38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16	1864.8.	南永錫 등 (26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17	1865.3.	黃晦鱗 등 (53명)	경상도관찰사	“공의를 더 들어보라”는 처분

18	1865.11.	南始壽 등 (87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19	1865.12.	黃中致 등 (37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20	1865.12.	黃中致 등 (33명)	경상도관찰사	“공론을 더 모으라”는 처분
21	1866.2.	黃中稷 등 (8명)	풍기군수	“공의를 모을 동안 더 기다리라”는 처분
22	1867.9.	黃柱夏 등 (22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23	1872.10.	南永錫 등 (33명)	풍기군수	“식년을 기다리라”는 처분
24	1872.12.	黃益夏 등 (41명)	경상도관찰사	“공의를 더 기다리라”는 처분
25	1873.9.	黃範鱗 등 (48명)	풍기군수	“공의를 더 모으라”는 처분
26	1875.11.	黃範鱗 등 (33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27	1878.7.	柳道復 등 (49명)	경상도관찰사	“나라에서 포양할 것이다”는 처분 경상도내 타 지역 유생들 참여
28	1878.12.	李晚星 등 (15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29	1879.10.	黃範鱗 등 (26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30	1886.12.	南基炯 등 (25명)	풍기군수	“의론이 모이기를 더 기다리라”는 처분
31	1891.12.	金宇欽 등 (20명)	풍기군수	“허락을 받았으니 예조로 올리라”는 처분
32	1892.9.	金相順 등 (12명)	풍기군수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요청

위 표와 같이 1848년(헌종 14) 8월부터 시작된 풍기군 내의 유생 및 경우에 따라 인접 고을 유생들까지 힘을 보탠 단체 청원은 1892년(고종 29) 까지 44년간 지속되었다. 소지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1848년 8월의 문서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기왕에 제출한 소지와 그에 대한 전임 수령 및 관찰사의 처분문을 재인용하는 등의 차이가 보일 뿐이다.

대체로 고을 수령인 풍기군수와 경상도관찰사는 도시복의 효행에 대한 소지를 접수한 뒤 그 효행을 칭찬하면서 행정 절차에 따라 조정에 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식년을 기다리라”는 처분과 “공의를 더 모아서 다시 제출하라”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식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정조 대에 반포된 『대전통편』 禮典의 嘉勸條에 보이는 대로 매 식년마다 각도에서 올라온 효자 등의 정려 사안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이후 해당 주기에 맞춰 일을 처리한 것과 관계된 처분으로 판단되고,¹⁴⁾ 공의를 더 모으라는 것은 조선후기 들어 효자, 열녀 등에 대한 정려 요청이 쇄도하면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식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지역의 公論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중시 여긴 경향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¹⁵⁾

위 문서들을 통해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역민들의 역할 분담 양상도 엿볼 수 있다. 수령의 교체, 관아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 등으로 도시복에 대한 효자 정려가 성사되지 않은 채 일이 장기화되자 청원을 주도한 대표자들의 명단도 계속 바뀌었다. 이 변화 양상을 통해 지역의 몇몇 주요 가문 간의 역할 분담의 정황이 보인다. 생원, 진사 또는 관력을 병기한 인물들의 경우 방목 등에 수록된 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므로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1857년(철종 8) 3월에 제출된 문서에 보이는 進士 崔景魯와 生員 黃在衡은 각각 거주지를 풍기로 둔 충주최씨, 창원황씨 집안 사람이고, 사마방목에서 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문서에서도 충주최씨 집안의 진사 崔泰準, 창원황씨 집안의 진사 黃止敬, 진사 黃壽夏, 진사 黃祖夏 등이 확인되고, 이 외에도 영양남씨 집안의 생원 南基成, 순흥안씨 집안의 진사 安鳳熙 등도 확인된다.¹⁶⁾ 위 성씨는 현재까지도 예천,

14) 『大典通編』禮典, 嘉勸, “…… (增) 凡係旌閭·贈職·給復等事, 自政院奉承傳, 謄布中·外. ○ 孝烈合旌·復者, 諸道抄啓, 每式年歲首, 本曹三堂上齊會詳審, 移送政府後, 別單 啓稟.”

15) 김혁, 앞의 논문, 109~117쪽.

16)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풍기 지역의 주요 세거 성씨이고, 19세기 도시복의 효자 정려 청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요 집안이었다. 소지류 문서의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자들의 성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특정 인물이 계속 등장하기보다는 성씨와 인물이 계속 교체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에 따라 일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암행어사를 통한 지역민들의 호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효자 포장을 요청하는 방법은 고을 수령으로부터 관찰사를 경유하여 단계별 절차를 통해 왕의 윤허를 받는 방법 외에도 암행어사를 통해 왕에게 곧바로 아뢰어 주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사만 된다면, 고을 수령으로부터 관찰사, 예조 등을 경유하는 방법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성주도씨 후손가의 고문서 가운데는 이렇게 암행어사의 행차에 맞추어 제출한 문서도 6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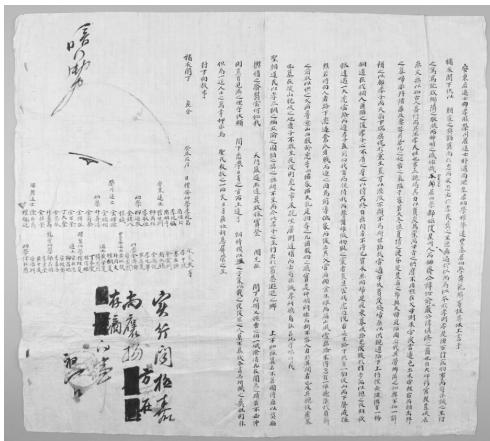
여기에 등장한 진사 최경로, 생원 황재형, 진사 황지경, 진사 황수하, 진사 황조하, 생원 남기성, 진사 안봉희 등은 조선시대 사마방목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거주지 “풍기”와 본관이 명확히 확인되고, 생존 시기도 소지를 제출한 시기에 부합한다.

〈표3〉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현황

연번	작성 연월	발급자 (연명자 수)	수취자	비고(내용, 제사 등)
1	1854.9.	蔡周虎 등 (38명)	암행어사	“왕께 아뢰겠다”는 처분
2	1857.12.	權有慶 등 (46명)	암행어사	“왕께 아뢰겠다”는 처분 암행어사 대구 행차 시
3	1858.2.	洪亘柱 등 (28명)	암행어사	“왕께 아뢰겠다”는 처분 암행어사 예천 행차 시
4	1874.11.	權大紳 등 (54명)	암행어사	“마땅히 포양될 것이다”는 처분 암행어사 예천 행차 시 안동, 예안, 예천, 풍기 유학 연명
5	1877.12.	柳道復 등 (42명)	암행어사	“마땅히 포미해야 할 것이다”는 처분 안동, 예안, 예천, 풍기 유학 연명
6	1883.5.	柳孝睦 등 (49명)	암행어사	“포양에 대해 헤아릴 것이다”는 처분 안동, 영천, 예천, 풍기 유학 연명

암행어사들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제출한 문서에 제사를 써주면서 한번도 부정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암행어사들의 긍정적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시복에 대한 효자 정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암행어사가 현장에서 접수한 효자 정려에 대한 민원은 조정으로 복귀 후 절차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 가운데 1883년(고종 20)의 사례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수록되어 있어 그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당시 경상좌도암행어사였던 李道宰는 1883년(고종 20) 5월 안동, 영천, 예천, 풍기 유학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소지에 도시복의 효행을 가상하다고 평하며, 포양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제사를 적고 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마패를 날인하였다.

<자료 5> 1883년 안동 진사 류효목 등 상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고종 20년 9월 23일 기사에 경상좌도암행어사 이도재가 올린 別單이 수록되었는데, 도시복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풍기의 유학 도시복은 성실함과 효성이 평소 드러났으니 마땅히 아름답게 여겨 포상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각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¹⁷⁾

경상좌도암행어사 이도재에게 올린 소지와 이를 근거로 한 암행어사의 보고, 그리고 예조에서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한 왕의 윤허까지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되지만, 1883년 5월 이후 1892년까지 지속된 소지를 통해 1883년에도 결과적으로는 도시복에 대한 정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암행어사의 보고까지 있었더라도 정려 업무를 담당한 실무관서인 예조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

17) 『고종실록』고종 20년 9월 23일 임자 1번째기사. “‘豐基幼學都始復，誠孝素著，宜加褒美’事也。此則令各該曹稟處何如？竝允之。”

(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

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한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려 대상으로 확정되면, 예조에서는 해당 사실을 담은立案을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旌門을 세우는 데 소요되는 목재와 인력의 지급을 해당道와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였다.¹⁸⁾ 성주도씨 후손가의 고문서 가운데서 이러한 예조의 입안이나 정려 건립 등에 관련된 공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최종적으로 도시복의 정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44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다방면의 노력에도 도시복에 대한 효자 정려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민들은 서로 분담하여 고을 수령과 관찰사를 통한 일반적인 정려 요청 절차를 지속하였고, 틈틈이 암행어사의 행차에 맞춘 호소 노력 을 병행하였다.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왕의 어가 행렬에 뛰어들어 격쟁 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지역 유생들의 공론을 전달하고자 노력한 것만은 분명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정표 정책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하였는데, 충효열에 대한 정표는 분명 국가적 장려정책이었지만, 무분별 한 정표 대상의 확대는 復戶 대상자의 양산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 가 재정이나 노동력 확보 등에는 부담을 주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¹⁹⁾ 이 때문에 조선후기 들어 갈수록 증가한 전국 각지의 정표 요청을 담당 관서에서는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어진 측면도 있다. 도시복의 효자 정려 요청 사안도 지역민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고, 성사시키고자 한 현실적인 전략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19세기 중·후반 전국적으로 과열된 효자, 열녀 등에 대한 정려 요청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8) 김혁, 앞의 논문, 129~130쪽.; 이수진, 앞의 논문, 103쪽.

19) 고순영, 「조선-대한제국기 정표제도의 변화와 소멸」, 『한국사학사학보』48, 한국사학 사학회, 398~400쪽.

IV. 일제강점기 증보판『明心寶鑑』에 수록된 도시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자 도시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포장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복의 자손들은 사십 년 이상 이어진 지역민들의 공론이 담긴 문서와 도시복 사후 그의 효행에 대한 칭송의 글, 행장, 묘갈명 등을 모아『也溪都公實記』의 편찬을 추진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미 그 초본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최종 간인본은 1970년 全胤錫의 서문과 都相喆(도시복의 증손)의跋문을 붙여 일반에 배포되었다.

성주도씨 후손가에 전해진 고문서 가운데 1935년(을해) 2월 5일 財團法人 大東斯文會의 회장 대제학 鄭萬朝 등 21명의 명의로 발송된 答通文을 보면, 효자 星州都公實記에 수록된 내용을 보고 크게 감복하여 대한사문화에서 표창문 1책을 기술하여 본손가에 부친다는 내용이 있다.²⁰⁾ 재단법인 대동사문화는 일제강점기 1920년 1월25일 창립된 유림 단체의 하나로서 1935년 2월 전에 이미 도시복에 관한 ‘성주도공실기’로 언급된 책자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도시복의 효행 사례가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명심보감』은 염밀히 말해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증보판『명심보감』이다.『명심보감』이라는 민간에 널리 알려진 책에 도시복의 사례가 수록됨으로써 지금 까지도 효자 도시복에 대한 일화가 조선시대 수많은 효자 사례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복의 효행 사실이『명심보감』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록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심보감』의 서지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원나라 말 范立本이 편찬한『명심보감』이 조선에 들어와 1454년(단종 2) 청주에서 간인되었고, 이후 조선 중·후기에는 이 원본에 비해 내용을 대폭 축약한

20) “謹按孝子星州都公實記, 公至誠事親, 哀毀居喪, (...中略...), 自本會謹述表彰文一冊, 付之本孫家.”

『明心寶鑑』抄略本이 주로 유통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증보판이 편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14년 新舊書林에서 발행한 『懸吐具解 增補明心寶鑑』과 1919년 匯東書館에서 발행한 『增補註解 明心寶鑑』이다.²¹⁾ 이 가운데 1914년 『현토구해 증보명심보감』의 孝行編(續)에 효자 사례 3건이 수록되었고, 여기에 도시복의 사례가 포함되었다.²²⁾ 이후 여러 『명심보감』이 1914년 신구서림본을 저본으로 지속적으로 발간되었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1914년 신구서림에서 간행한 『현토구해 증보명심보감』은 기존에 조선후기에 널리 유통된 『명심보감』초략본에 수록된 19편 외에 增補篇, 孝行篇(續), 廉義篇을 추가하였다.²³⁾ 다만, 신구서림본의 편찬 취지나 '효행편(속)'에 수록된 사례의 선정 등에 대한 배경을 짐작할 만한 기록이 없어 조선시대 수많은 효자 사례 가운데 도시복의 사례가 선별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 아래는 1914년 신구서림에서 발행한 『현토구해 증보명심보감』에 수록된 효자 도시복에 대한 수록 내용이다.

都氏 | 家貧至孝라 賣炭買肉흐야 無闕母饌이라가 一日於市에 晚而忙歸러니 鳥忽攫肉이어늘 都 | 悲號至家흐니 鳥既投肉於庭흐고 母 | 病索非時之紅柿어늘 都 | 徘徊柿林에 不覺日昏이러니 有虎屢遮前路흐고 以示乘意라 都 | 乘至百餘里山村흐야 訪人家投宿이러니 俄而主人이 饋祭飯而有紅柿라 都 | 喜問柿之來歷흐고 且述己意흔디 答曰亡父嗜柿故로 每秋擇柿二百個흐야 藏諸窟中而至此五月則完者不過七八이라가 今得五十個完者故로 心異之러니 是天感君孝라흐고 遺以二十顆어늘 都 | 謂出門外흐니 虎尙俟伏이라 乘至家흐니 曉鷄喔喔이러라 後에 母以天年으로 終에 都 | 有血淚리라 都氏는 醫泉人也니 李朝哲宗時也²⁴⁾

도씨는 집이 가난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속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가

21) 김동환, 「明心寶鑑」의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10, 1994.

22) 앞에 수록된 2건은 신라시대 인물 孫順과 尚德의 일화이고, 마지막에 수록된 것이 도시복에 대한 일화이다. 손순은 어머니 봉양을 위해 자식을 버리려 한 일화로 유명하고, 상덕은 흉년에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부모께 음식으로 올린 일화로 유명하다.

23) 김동환, 앞의 논문, 634쪽.

24) 新舊書林, 『懸吐具解 增補明心寶鑑』, 1914, 102~103쪽.

드실 반찬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였다. 하루는 장에 갔다가 늦어 서둘러 귀가하는데,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낚아채 가거늘 도씨가 슬퍼 한탄하며 집에 와보니 솔개가 벌써 고기를 집안 뜰에 던져 놓았더라. 어머니가 병중에 제절도 아닌데 홍시를 찾으시거늘, 도씨가 감나무 숲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여러 번 앞길을 가로막으며 등에 타라는 뜻을 보였다. 도씨는 호랑이를 타고 백 여리 떨어진 산촌에 이르러 어느 인가에 묵게 되었는데, 얼마 후 집주인이 차린 제사상에 홍시가 놓여 있었다. 도씨는 기뻐하여 그 홍시를 구한 내력을 묻고 또 자신의 사연을 말하자 대답하기를, “선친께서 감을 즐기셔서 매년 가을이면 감이백 개를 가려내어 굴속에 보관해 뒀다가 이렇게 오월에 이르면 온전한 것이 일곱 여덟 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오십 개나 온전하여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더니, 이는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로다.”라고 하고는 이십 개를 내어주었다. 도씨가 사례하고 문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여전히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 호랑이를 타고 집에 오니 새벽닭이 울었다. 후에 어머니가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시니 도씨는 크게 슬퍼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도씨는 예천 사람이고, 조선 철종대의 인물이다.)

*현대어 번역: 필자

위 내용은 앞서 살펴본 19세기 소지에 수록된 내용과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일화의 내용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소지에는 펑이 스스로 도시복의 집에 날아와 떨어졌다 고 되어 있는데, 증보판『명심보감』에는 솔개가 고기를 낚아채 와서 도시복의 집에 먼저 떨어뜨려 놓은 것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호랑이와 관계된 일화도 소지에는 도시복이 귀가하는 길목에서 만난 호랑이가 도시복의 효성에 감복하여 그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명심보감』에서는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홍시를 구하러 나선 길에 호랑이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도시복의 어머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심보감』에는 천수를 다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일제강점기 증보판 『명심보감』을 편찬하면서 가까운 시기에 효자로 이름난 도시복의 사례를 근거로 보다 극적이고, 주변의 다른 개연성이 있는 요소들과 결합시켜 새로운 서사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보판에서 등장하는 홍시는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예

천군 상리면(효자면), 하리면(은풍면) 일대의 곳감인 ‘은풍준시’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복이라는 실존 인물의 사연, 지역적 특성, 서사의 극적이고 무난한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탄생시켰다고 평할 수 있다.

V. 맷음말

이상에서 ‘효자 도시복’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복이라는 인물이 19세기 경상도 풍기군 상리면(현 예천군 효자면)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음을 여러 고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도시복의 효행은 동시대를 살았던 지역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제도에 따른 포장이 내려지기를 요청한 사실도 고문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비록 4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된 지역민들의 노력은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효자 도시복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에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증보판 『명심보감』의 역할이 크다. 증보판 『명심보감』을 편찬할 때 효자 사례 3건을 수록하면서 신라시대의 두 인물과 더불어 19세기 도시복의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이후 도시복의 효행은 『명심보감』에 수록된 조선의 대표적인 효자 사례로 거론되게 되었다. 그러나 『명심보감』에 수록된 도시복의 효행에 대한 내용은 19세기 고문서에 수록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의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변형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최근 발견된 성주도씨 후손가에 전해진 도시복 관련 고문서를 바탕으로 고문서의 개괄적인 현황, 도시복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효자 일화의 형성과 변형을 위주로 탐구하였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제도사적 탐구, 개별 고문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조선후기 효자 정례에 대한 사회사적 함의 등에 대한 논의 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전체 고문서에 대한 공개, 원문에 대한 탈초 및 번역

등을 통해 학계에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도시복 관련 고문서가 담고 있는 다방면의 연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通編』

都相喆, 『也溪都公實記』, 1970.

星州都氏大同譜編纂委員會, 『星州都氏大同譜』, 2013.

新舊書林, 『懸吐具解 增補明心寶鑑』, 1914.

조선시대 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law>).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고순영, 「조선-대한제국기 정표제도의 변화와 소멸」, 『한국사학사학보』48, 한국사학회, 398~400쪽.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김 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藏書閣』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97~139쪽.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研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83~113쪽.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單子와 準戶口의 작성과정 연구 -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155~186쪽.

박 주, 「18·19세기 東來府 頤陽千氏 집안의 孝子旌閭 청원 과정」, 『史學研究』85, 한국사학회, 2007, 77~120쪽.

박 주, 「朝鮮時代 孝子에 대한 旌表政策」, 『韓國思想史學』10, 한국사상사학회, 1998, 291~311쪽.

이다희, 「조선시대 所志類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3.

이수진, 「조선후기 旌閭 관련 고문서와 제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임강촌, 『하늘이 낳은 효자 도시복』, 두레미디어, 2011.

전경목, (고문서용어 풀이)「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古文書研究』6, 한국고문서학회, 1994, 143~158쪽.

■ Abstract

A Review of Old Documents Related to Do Sibok, a Filial Son, Included in the Expanded Edition of '*Myeongsimbogam*'

Park, Sung-ho

Recently, 59 ancient documents related to the filial son Do Sibok, which had been passed down to the descendants of the Seongju Do Family since the 19th century, were entrusted to the Yeocheon Museum. Among these ancient documents, there are many petition documents from the 19th century in which local residents gathered together to request that the country recognize Do Sibok's filial piety, and also include official documents from the time that prove Do Sibok's historicity.

These ancient documents are important evidence that the filial piety of Do Sibok, who lived in Sangli-myeon Yamok-ri, Punggi-gun (now Yeocheon-gun) in the 19th century, has been known from that time to later generations.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Do Sibok's filial piety contained in the expanded edition of '*Myeongsimbogam*'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contents written in 19th century old documents, we can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ory of Do Sibok, a filial son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the contents written in 19th century old documents.

keywords :

A Filial Son, Do Sibok, Old Documents, Jeungbo
Myeongsimbogam(an expanded edition)

